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18.

발의자 : 장정숙 · 천정배 · 전혜숙

김종회 · 박찬대 · 유성엽

김광수 · 주승용 · 이용호

박주현 · 이동섭 · 김삼화

김중로 · 윤관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97조제1항, 제198조, 제199조, 제200조, 제201조제1항 및 제202조).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7조제1항 중 “5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제198조 중 “4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1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01조제1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4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- ----- <u>7천만원</u> -----.
제199조(벌칙)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4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99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7천만원</u>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20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0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<u>5천만원</u> -----.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01조(벌칙)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·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01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천만원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0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202조(벌칙) 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- <u>3천만원</u>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